AX실증밸리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AX실증밸리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 추진체계(주무부처·총괄부처·전문기관·사업단 간 역할),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공모·선정·협약·정산 및 사업단·사업단장 평가 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의 적용범위, 사업목적, 본 사업의 범위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주무부처·총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전문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등 사업 추진체계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사업단의 조직 구성・기능, 사업단 운영비, 사업단장의 자격·선정절차·근무조건 등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예고·공모·선정, 협약 및 출연금 지급, 연구

개발비의 관리·사용 및 정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 기술료의 징수,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33조까지)

마. 외부전문가 활용 및 경비지급, 사업단·사업단장에 대한 평가, 사업단장의 해임 및 연임평가, 사업 종료 후 후속조치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등 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중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훈령 제 호
산업통상부훈령 제 호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 호

AX실증밸리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AX실증밸리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AX실증밸리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이란 지역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모두의 AI", "모빌리티 AX", "에너지 AX" 등 AX 실증 R&D 및 AX 인프라의 구축·운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무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말한다.
3. "총괄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

처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란 사업에 지방비를 공동 출연하여 참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수행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7. "사업단장"이란 제9조에 따른 사업단의 장을 말한다.

8. "연구개발과제"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제를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10.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1.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와 사업단 운영비를 말한다.
13. "연구개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14. "사업단 운영비"란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15. "지방비"란 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및 주무부처별 소관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행정규칙(이하 총괄하여 '부처별 규정'이라 한

다)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3.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② 지방비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이 규정 및 혁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AX실증밸리조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업목적 및 기간) ① 사업은 AX 실증 R&D 및 AX 인프라 등을 선제적인 첨단 인공지능 전환 기술 도입을 통해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총괄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성과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

되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두의 AI 구현 : AI 적용의 혜택이 특정 그룹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AI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모두의 AI' 구현
2.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 물리 세계와 주어진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물리(Physical) AI 기반의 초지능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구현
3.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AX 핵심 기술개발
4. AX 촉진 거점 구축 : 대규모 AI 연구개발 및 실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성능 AI 컴퓨팅 자원 및 AI 연구개발과 연계한 실증 및 상용화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AX 혁신 인프라 구축

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

제6조(주무부처·총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지정한 사항

② 총괄부처는 주무부처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무부처 간 의견 수렴 및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대외 협력 및 총괄 대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의견을 주무부처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10인 이내(주무부처 담당 과장급 각 1인, 제2조제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직원 각 1인, 사업단장 및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급 각 1인)

2. 민간위원 4인 이내(주무부처에서 각 1인씩 추천한 자와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1인)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는 제4조제2항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결원이 생길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 배분·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자체 규정·지침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단장 선임, 연임, 해임, 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무부처, 사업단장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운영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

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제과제에 대한 출연금 회수, 제재처분 및 제재부가금·환수금의 독촉·징수 등 제재처분·환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무부처에 보고·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보고·제출할 수 있다.

1. 제7조제5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0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제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특별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7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

7.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평가·정산·제재처분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④ 전문기관은 대행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대행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제9조(사업단의 조직 구성) ①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부설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라 한다.)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업단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조직 구성 및 하부조직의 세부 기능에 관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단 기능) ① 사업단은 전문기관에 준하여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단계별 목표·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총괄 기획 및 과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 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보완 등 과제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과제협약
4.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보고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8.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9. 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
10. 연구개발과제정보 및 연구개발성과의 전산시스템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③ 사업단은 사업단의 내부 행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은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37조에 따른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평가 등에 대해 사전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단은 전문기관의 조치 요청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토 대상, 범위, 방법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괄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은 사업단 인건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운영비 중 지방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제13조에 따른 선정 절차를 통해 선임한다. 다만,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장을 사업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과제의 총괄기획 및 조정, 평가, 진도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8. 연구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거점 구축·운영 및 연구데이터,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임 사업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단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 계획에서 정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4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4조제3항에 의해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처는 주무부처간 협의와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4조(사업단장 추천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차 및 제2차 추천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4인 이내(주무부처 담당 과장급 이상 각 1인과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담당 과장급 이상 1인)
2. 민간위원 8인 이내(주무부처에서 각 2인씩 추천한 자와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2인)

③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각 주무부처에서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별로 각각 2인씩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총괄부처가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 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다만, 지자체에 소재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으로 수행하는 직무 및 주무부처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매수 및 경영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연구과제 및 용역과제의 참여・수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의 보수(성과급 포함)는 사업단의 성과 및 평가결과, 공무

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본 사업의 사업단장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39조에 따른 연임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단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르되,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사업단장을 선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자체에 소재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장 사업의 운영

제16조(연구개발과제 기획) ① 사업단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 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 예고 및 공모) ①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혁신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사업 지원 대상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사업단장의 명의로 실시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은 선정평가기준, 절차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기관과 선정평가 기준, 절차,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선정평가 계획 수립시 혁신법 제10조제2항의 각 호와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지표는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은 제5항의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 사업단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요건, 재무상황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⑨ 사업단은 동 규정 제7조제2항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⑩ 사업단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협약 및 출연금) ① 사업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약 체결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및 출연금 지급·정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총괄협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사업기간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규모 및 분담 비율

3.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출연 지연 또는 규모 축소 시 국고 출연금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또는 전문기관이 주무부처에 보고·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의 지방자치단체 보고·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 규정 각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 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은 동 규정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 및 해약과 관련된 사항은 혁신법 제11조, 혁신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를 따른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단에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용도,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 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른다.

②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정보의 등록·관리) ① 사업단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과제 성과의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사업단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과제평가 항목·기준·절차, 평가위원회 구성방안 및 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제3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의 단계 및 최종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사업단은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단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업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⑥ 사업단은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은 특별평가 등을 통한 중단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도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 ① 사업단은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은 제22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제22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③ 사업단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사업단에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단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제2항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회수된 정산금은 해당 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된 정산금의 지방비의 납입과 관련하여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⑥ 주무부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 등은 혁신법 제13조를 따른다.

제28조(사업비의 이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주무부처 승인 후 남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운영비 이월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기술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실시가 이루어진 경우 사전에 사업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실시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구관리전문기

관, 제26조의 연구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지식재산의 관리) 사업단은 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하여는 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하는 기술료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따른다.

②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부처의 승인을 받은 각 전문기관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2조(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① 사업단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

4. 매출 미발생 시 사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확인서

② 사업단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 등) ①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제재처분평가단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는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④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이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국고 및 지방재정에 납입한다.

⑦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와 관련된 절차는 혁신법 제32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3조에 따라 진행한다.

제34조(의견청취) ① 운영위원회,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AX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외부전문가 활용) 사업단은 과제 발굴,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경비지급) ① 사업단 및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기획 자문위원
3.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4. 그 외 본 규정에서 정한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외부전문가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및 사업단·사업단장 평가 업무 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등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

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단 관리

제37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업 첫해는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8조(사업단장의 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직위해제 및 해임하려는 경우 사업단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각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소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직 자체의 해임 또는 사임 여부는 해당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자체에 소재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단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본 사업의 사업단장직도 동시에 공석이 된 것으로 보며, 총괄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임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임시 직무대행자는 후임 사업단장이 지정될 때까지 본 사업의 사업단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후임 사업단장의 선정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9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주무부처를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는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은 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의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자료제출의 의무) ① 주무부처, 전문기관 및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관하여 사업단에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사업단 및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단장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총괄협약및 연구개발과제 협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사업단장 선정 평가 절차(제13조 관련)

[별표 2]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제14조 관련)

[별표 3] AX실증밸리조성사업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절차(제37조 관련)

■ AX실증밸리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안) [별표 1]

사업단장 선정절차(제13조 관련)

1차 평가준비	접수 및 사전검토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 제출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확인
	1차 추천위원회 구성	–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과장 3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과장 1인) – 민간위원 8인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한 8인)
1차 평가 (서면평가)	추천위원회 평가방법 교육	– 선정평가방법, 기준, 항목 등을 안내 – 사업추진 계획서 등 평가자료 배포
	1차 평가 실시	– 서면평가 * 최초 접수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 최종 접수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를 제외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한다.
1차 평가 결과 통보 및 2차 평가 준비	3명 이내 후보자 선발 및 통보	– 개별통보
	2차 추천위원회 구성	–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국장 3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장 1인, 대리참석 가능) – 민간위원 8인(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 * 1, 2차 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은 중복되지 않음
2차 평가 (발표평가)	2차 추천위원회 평가방법 교육	– 선정평가방법, 기준, 항목 등을 안내 – 서면평가 의견, 발표자료 등 평가자료 배포
	2차 평가 실시	–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 후보자 순위선정 – 운영위원회에 추천
최종선정	운영위원회	– 평가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사업단장 최종 선정
평가결과 통보	선정결과 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AX실증밸리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안) [별표 2]

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제14조 관련)

평가항목	평가 지표	가중치	높음 ← → 낮음					소계
			5	4	3	2	1	
비전 및 리더십 (30)	- 사업의 목적, 범위, 추진체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AX 실증밸리 조성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가							
	- 다부처·지자체 협력사업을 총괄할 리더십과 조정능력이 있는가?							
과거 업적 및 R&D 관리역량 (20)	- AI, AX, 모빌리티, 에너지, 실증 인프라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대형 공공사업 기획·관리 경험이 있는가?							
	- 연구개발과제 평가·협약·정산·성과관리 등 전주기 관리역량이 있는가?							
사업 추진전략 및 관리계획 (40)	- 모두의 AI, 모빌리티 AX, 에너지 AX, AX 촉진 거점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구체성이 있는가?							
	- 사업단 조직구성이 구체적이고, 운영관리계획이 적정한가?							
	- 성과지표, 성과확산, 사업화 및 실증연계 계획이 우수한가?							
	- 위험관리 및 일정·예산 관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국내외 네트워킹 및 협력역량 (10)	- 주무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연구기관, 기업, 수요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역량이 우수한가							
	- 국내외 AI·모빌리티·에너지 분야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는가?							
합계 (100)			_____점					

■ AX실증밸리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안) [별표 3]

AX실증밸리조성사업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절차(제37조 관련)

사전 현장점검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전문기관
* 동 규정 제37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

전문가 평가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기관 공동 구성
* 동 규정 제37조제2항

1. 세부평가항목(안)

· **[목표,30점]** 목표의 중간 달성도(10), 성공가능성(10), 사업범위 준수여부(10)

· **[수행,30점]** 수행전략 적절성(10), 계획 준수도(10), 사업단운영 적절성(5), 과제선정의 적합성(5)

· **[성과,40점]** 성과의 혁신성(10), 실용성(15), 시장진출 가능성(15)

2. 평가위원 구성(안)

· **[구성]** AX실증밸리조성사업화 및 활용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

· **[제척사항]** 과제평가단 운영 기간 중 사업단 과제 수행 중인 자, 사업단 및 사업단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발표평가

→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전문기관 검토

-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의견 정리

→ - 전문기관 공동 검토

1. 종합점수

·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0-59점, [매우미흡] 50점 미만

2. 종합검토의견

· 매우 미흡의 경우 사유를 서술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의견 접수

→ - 전문기관 → 부처(14일 이내 보고)
* 동 규정 제37조제3항

↓

평가결과 통보

- 사업단에 평가결과 통보

→ - 전문기관→사업단
* 동 규정 제37조제4항

↓

운영위원회 보고

- 운영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

→ - 평가 결과 보고
* 동 규정 제37조제4항